

INDEX

◎ 한국IPG의 활동

- 제10회 '한국IPG세미나'(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01
-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심판실무 및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03
- 한국지식재산세미나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동향 및 라이선스'(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안내 04
- 2012년도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보고 05

◎ IP를 알자

- 한국 IP뉴스 06
- 「신·지재최전선은 지금」
- 특허권 침해 발견시
~행정적 구제수단에 의한 대응~ 07
- 기술력이 향상하고 있는 한국기업 08

韓国IPGへのメンバー登録

http://rene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기는 방법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①에어컨 과다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주의, ②균형잡힌 식사, ③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④충분한 수분 보충, ⑤차가운 음료 많이 마시지 않기 등 신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여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한국IPG의 활동

‘제10회 한국IPG세미나’(일본특허청 위탁사업) 개최

지난 7월1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국IPG세미나’는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IPG회원 및 관계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박진규 센터장님을 모시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IT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윈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한국기업을 비롯해 일본기업도 이용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세션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지재분쟁에 관한 최신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삼성 애플의 법정공방은 여러 세미나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교수님(법학박사)을 모시고 소송 발생부터 현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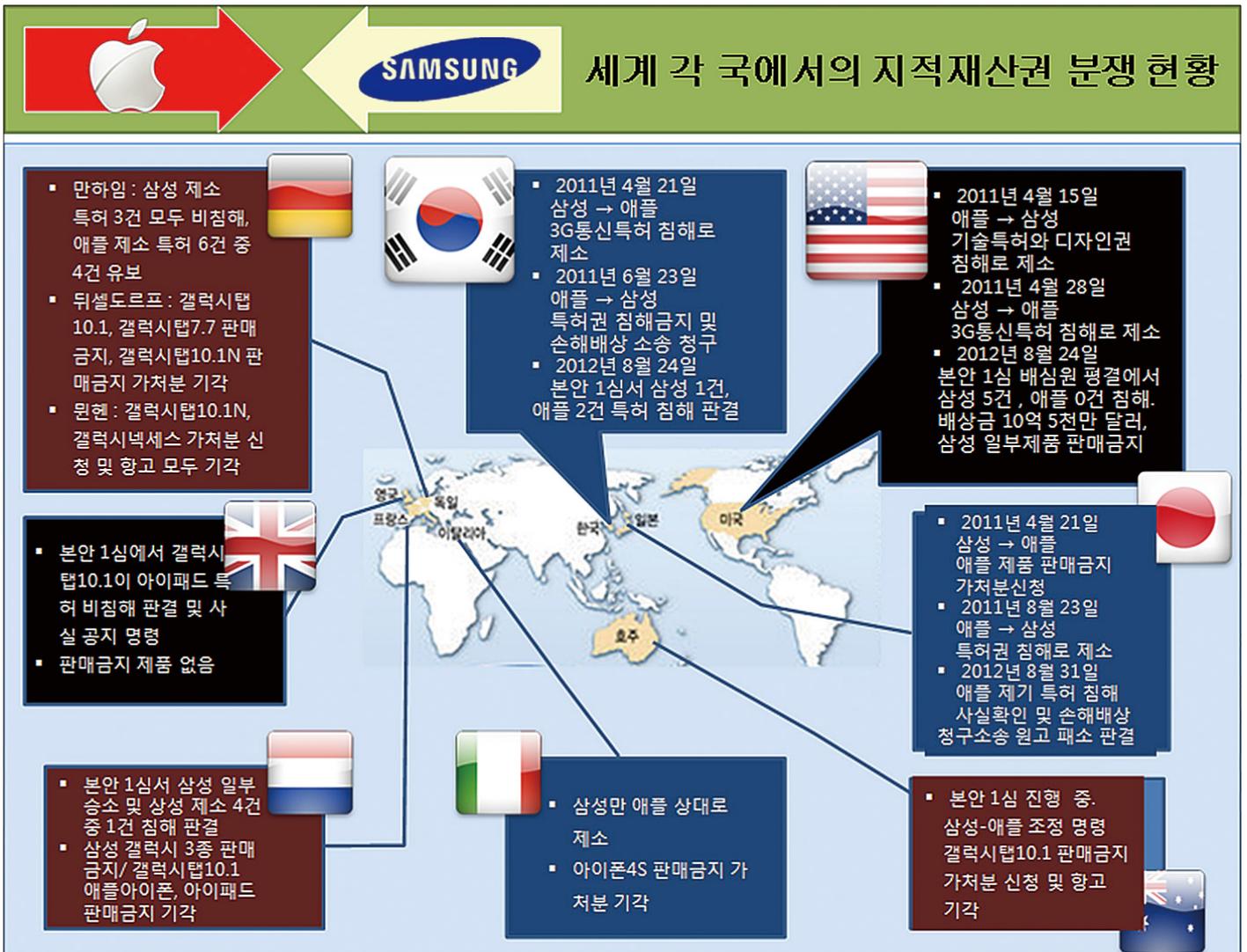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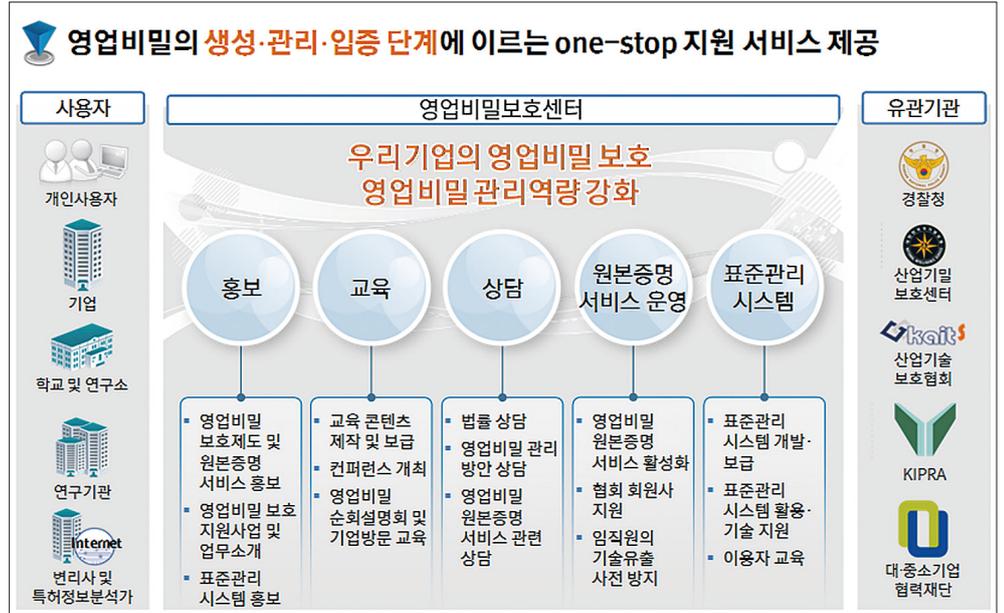
© 한국IPG사무국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양사의 주장, 트레이드 드레스와 디자인, 표준특허(국제 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 등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개요는 제트로 지재홈페이지(<http://renew.jetro-ipr.or.kr/>) → 각종정보 → 세미나·이벤트 등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r.kr/) → 각종정보 → 세미나·이벤트 등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심판실무 및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한국 지식재산 세미나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특허제도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허심판 실무에 관한 소개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25일과 26일, 도쿄와 오사카에서 특허법인 화우의 강응선 변리사님을 초청하여 한국 특허심판원과 한국특허법원 기술심판관 등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한일심판 실무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특허법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법 조약을 염두에 둔 절차규정에 대한 완화 등 법개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윤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인기 대표변리사님을 초청하여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개정동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약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참가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세션1: 한국의 심판·심결취소 소송실무에 대한 소개〉

- 강응선 특허법인 화우 파트너변리사

세션1에서는 한국의 심판청구, 처리기간 현황을 비롯한 일본에 없는 제도로 2009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된 재심사제도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와 함께, 일본의 판정제도와 다른 제도로 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제품에 대해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한국의 무효심판에 관한 문제점으로 특히 최근 일본기업이 제기하고 있는 높은 무효율에 대해 일본과의 제도면의 차이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새로운 증거로서 제출 가능하며 심결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무효이유를 추가하거나 주장이 인정되는 등 일본과의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알려주셨고 이외에도 한일의 심판청구인의 요건에 대한 차이나 정정청구의 요건에 대한 차이를 기준으로 한 실무상의 주의점, 무효심판 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Home Decision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심판관과의 면접방법이나

심결취소소송 현황 등 실무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션2: 한국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과 주의점 등>

- 김인기 **한양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션2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과 향후 법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6가지로 1)출원의 회복기회 확대, 2)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3)복수 보정에 대한 취급의 명확화, 4)분할출원 등의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기간 개선, 5)정당한 권리자를 통한 특허출원의심사청구기간 개선, 6)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된 선행기술의 범위확대 입니다.

이 중에 특히 1)에 대해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관련 규정의 미비로 구제하지 못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입한 것이며 출원심사의 청구기간(5년) 및 재심사 청구기간(거절심

사 등본송달일부터 30일)을 대상으로 출원인의 귀책없는 사유에 의해 당해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3)은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응답기간내에 복수의 보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선행의 보정이 취하되는 제도이며 일본의 제도 운영과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특허법 개정동향과 관련하여 2013년 3월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 1)출원일 인정요건 완화(논문출원 등 가능), 2)명세서 언어요건 완화, 3)외국어출원의 보정기준 완화(이른바 원문주의 도입), 4)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회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을 범으로 명문화, 5)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완화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특허법을 비교하여 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한국 지식재산 세미나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동향 및 라이선스’ 개최 안내

한국 대기업이 전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금 일본기업에게 한국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은 자사 기술 보호 및 활용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과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체결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기업의 동향과약을 위해 특허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개요>

- 일시: 2013년 9월10일(도쿄, 정원200명), 11일(오사카, 정원80명)
14:00~17:10(접수13:30~)
- 장소: (도쿄)제트로 본부 5층 ABCD회의실
약도: <http://www.jetro.go.jp/jetro/profile/map.html>
(오사카)한큐그랜드빌딩 임대회의실 1~3호실

약도: <http://www.hhbm.hankyu-hanshin.co.jp/meeting/grand/access.html>

<순서(질의응답 시간 포함. 제1부와 제2부는 한일 동시통역)>

14:00	개회
14:10~14:50	한국 정부에 대한 서울제팬클럽의 건의사항 소개 제트로 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
14:50~15:30	제1부 특허출원 등의 측면에서 본 삼성전자, LG전자의 기술동향 한양국제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김세원
15:30~15:40	휴식
15:40~17:10	제2부 한국 지식재산 라이선스의 현황 및 실무 한양국제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 김세원

<참가신청 방법>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9월3일(화)까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jetro.go.jp/form5/pub/obc/iipf_korea201309

2012년도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보고

제트로 서울사무소는 서울재팬클럽(SJC)의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제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노동, 세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41개 항목을 제출하였고 그 중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사항이 22개 항목으로 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일본기업의 해당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상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해결과 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의 한국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상황과 2013년도 건의사항에 관한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총괄()는 전년도>

분야	항목수	수용가능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불가
노동	4(4)	0(0)	0(2)	4(1)	0(1)
세무	5(0)	0(0)	0(0)	2(0)	3(0)
금융	2(3)	0(1)	0(0)	0(0)	2(2)
지식재산권	22(22)	4*(11)	4(5)	12(5)	2(1)
개별요망 사항	7(6)	0(2)	1(4)	1(0)	5(0)
생활환경 개선	1(0)	0(0)	1(0)	0(0)	0(0)
합계	41(35)	4(14)	6(11)	19(6)	12(4)

*) 한국정부의 답변 중 수용가능이 4개 항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 항목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지식재산분야의 건의사항과 답변현황>

외국어 출원 용인 [사실상 수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 강화 [장기 검토]
PCT를 통한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보정 범위 [수용]	디자인 등록여건에 대한 확대 선원의 개선 [수용]
지정기한, 불복신청기간 연장 [장기 검토]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범위에 대해 [수용]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보호 [장기 검토]	디자인 무심사등록 물품에 대한 재검토 [장기 검토]
특허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장기 검토]	상표의 선후원에 관한 판단시기 개선 [사실상 일부 수용]
특허출원의 멀티멀티크레임 용인 [장기 검토]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기재 확대 [장기 검토]
특허 기한연장 제도에 임상실험에 가산 [수용 불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표의 판단기준에 대해 [일부 수용]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 제한 완화 [수용 불가]	전통제품 · 주류 등의 상표 보호강화 [일부 수용]
심판절차 개선 [일부 수용]	한국특허청 웹사이트(KIPRIS)의 개선 [일부 수용]
침해소송의 법원에서의 권리 유효 무효 판단 [장기 검토]	국경조치의 확대 [수용]
간접침해 규정의 명확화 [장기 검토]	일본 콘텐츠에 대한 규정 철폐 [장기 검토]

지식재산분야의 건의사항은 현재 위조상품 대책 강화 요청에 대한 대처는 2010년도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도입되었고 향후 예정되어 있는 법개정을 통해 외국어 출원제도 및 디자인 등록요건 개선 등 몇가지 건의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자 보호강화 등이 장기검토와 수용불가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영업비밀 유출 문제 등 일본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환경은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도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건의사항(지식재산권 분야)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력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제트로 서울사무소 지재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http://www.jetro-ipr.or.kr/sec_admin/files/kengi1\(2\).pdf](http://www.jetro-ipr.or.kr/sec_admin/files/kengi1(2).pdf)
- 제출용지: http://www.jetro-ipr.or.kr/sec_admin/files/kengi2.doc
- 제출기한: 9월27일(금)
- 제출할 곳: SJC지재위원회/제트로 서울사무소 지재팀 이와타니 가즈오미
- E-mail: kos-jetroipr@jetro.go.jp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 사무소 지적재산팀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뉴스 중에서, 위조품, 권리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지재동향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및 기타 뉴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뉴스 속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린 현대기아차, 미국서 판매금지 위기 (전자신문2013.4.24)
지식재산 전문업체 광개토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미국 내 특허소송이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0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현대기아차가미국에서 당한 소송 37건 가운데 48%인 18건이 2011년 이후 발생했다. 소송은 특허관리회사(NPE)가 주도했으며 전자 분야를 집중 공략하던 NPE가 전장부품 강화 추세에 발맞춰 자연스레 자동차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케이씨텍, 히타치와 특허소송 양사 합의하 취하 (디지털타임스 2013.4.25)
반도체 소재 슬러리 관련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케이씨텍'과 히타치화학이 진행한 특허 소송을 양사 합의하에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히타치 화학은 2011년 11월 미국에서 케이씨텍을 상대로 슬러리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케이씨텍은 작년 7월 한국에서 히타치화학을 상대로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제기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양사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됐다.

특허피물, 한국기업이 '밥' (전자신문 2013.6.5)
특허정보진흥센터가 5일 발표한 '표준특허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00여개가 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보유한 표준특허 수는 2009년 3199건에서 2012년 5050건으로 3년 만에 70%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인터디지털은 전체 표준 특허의 90%가 넘는 4561건을 보유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의 20% 이상을 한국 기업으로 부터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인터디지털에 표준특허로 지불한 로열티는 1억2000만~1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ITC '애플, 삼성 특허를 침해' (전자신문 2013.6.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

전자의 스마트폰117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정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팩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트로 주석: 8월3일, 오바마정권은 본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였다)

짝퉁 해외 자동차 부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디지털타임스 2013.6.27)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를 위조해 중국산 저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공장에서 짝퉁 텐서너, 허브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등 시내버스와 대형트럭의 핵심 부품을 서울 등지의 자동차 베어링 부품 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공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부품과 재료 등 6000여점(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웹케시와 한국후지쯔 포터블 브랜드 특허소송 갈등 풀렸다. (전자신문 2013.7.9)
한국 웹케시는 한국후지쯔가 자사의 포터블 브랜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한국후지쯔는 오히려 웹케시가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했으나, 양사는 지난 8일에 포터블 브랜드 특허 침해 관련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 후지쯔는 특허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웹케시와 공동발표 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or.kr/newsLetter_list.asp



특허권 침해 발견시 ~행정적 구제수단에 의한 대응~

특허권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특허권자로서 침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을 통한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해결방법 이외에도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요청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은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특허권자의 부담이 매우 크고, 또한 종래 한국세관에 있어서, 상표권 또는 저작권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은 인정되고 있었으나, 특허권침해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요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한국 무역위원회(KTC)를 통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무역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수단

일본 세관에서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종래 한국 세관은 수입 또는 수출금지물품을 '상표권이나 저작권,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물품'만으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보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종래 특허 침해물품을 한국 국내로 수입, 판매하는 행위나 수출을 목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무역행위"라 함)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설치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중지 등의 잠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약 한달 이내에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장점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통상, 분쟁해결과 관련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각 심급별로 약 10개월) 비용도 많이 들지만, 무역위원회를 통한 구제수단은 조사개시 후 판정까지의 처리기간이 약 6개월로 짧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전에는 무역위원회가 특허권침해라고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한 후 재수출입하여 판매·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안건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현재는 원래 침해물품과 동일한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매우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한국특허청에서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의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심판청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이용실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바, 가장 큰 이유로서는 본 제도에 대한 인식이 특허권자나 대리인에 의해서도 크게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사법원을 통한 구제소송에 비해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고, 침해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제3자의 침해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본 제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세관을 통한 특허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요청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세관을 통한 수출입금지물품에 기존의 상표권, 저작권등 외에 '특허권, 디자인권 및 중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권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고, 특히 특허권침해물품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이후에 최초로 수출입 신고등을 하는 것으로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기 기일 이후부터 특허권자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신고할 수가 있고 세관에서 특허권침해의심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로서, 세관이 특허권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사실을 통보한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담보제공을 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침해의심물품의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관세청은 이와 관련된 사무를 보다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올해 7월1일자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건수 (출처: 제트로 서울사무소 조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이전							(1월)	
138건	3건	3건	5건	13건	5건	8건	2건	177건

<이번 해설자> 특허법인 화우 강응선 파트너 변리사

경력: 한국특허청 심사관, 심사장, 심판관, 한국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등. 도쿄대학·대학원 졸업 후 현재 일본 가나자와공업대학학원교수 및 법원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중.

저서: 한국특허실무입문(일본경제산업조사사회 발간), 2011년도 제2판) 등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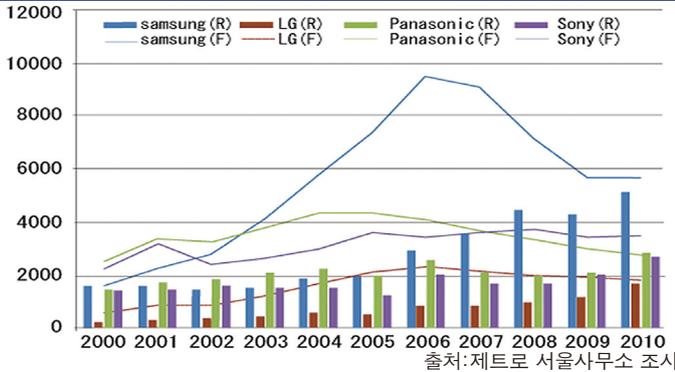
기술력이 향상하고 있는 한국기업

‘기술로 이기고 장사에서 졌다’ 작년까지 엔화강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일본기업이 자주 쓰던 말이다. 그러나 기술력으로는 지지않는다며 기술우위를 과신했다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선진국에서 특허출원을 높이는 한국기업

아래 표는 삼성전자, LG전자와 일본기업의 미국에서의 특허출원·등록 현황이다.

<그림1 미국특허출원·등록건수(F:출원, R: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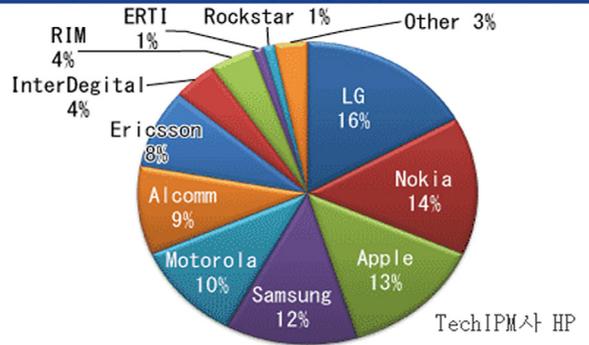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기업의 특허출원이 우세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는 일본기업의 2배가 넘는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No Patent, No Future’를 내걸고 고품질의 특허 취득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시장성, 지재분쟁 등에 대비해 미국에서의 특허취득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덕분에 2006년부터는 미국 특허출원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LG전자도 2004년부터 경영방침에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IP센터를 설립하였고, 2012년에는 미국 특허출원 10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 유럽 특허출원 최다 출원기업은 삼성전자이고 LG전자도 5위에 들어가 있는 등 선진국에서의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한국기업

지난 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여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본 LTE 표준특허 취득건수는 1위인 미국에 이어 2위(일본은 4위)를 차지하였다. 최다 출원기업은 삼성전자이며, LG전자는 7위를 차지했으나 일본기업은 상위 10위에도 들지 못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LTE관련 미국특허 중 주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그림2 LTE 관련 미국 주요 특허 (2012년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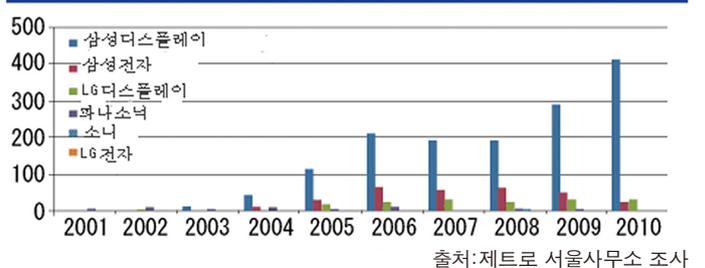


이와 같이 LG전자, 삼성전자는 상위에 진입해 있으나 일본기업은 순위에 없다. IEEE가 발표한 ‘PATENT POWER 2012’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분야 상위 20개사 중 1위 삼성전자, 10위가 서울반도체이며 일본기업은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3위, 르네서스엘렉트로닉스는 15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화학분야는 LG화학 6위(일본기업 닛토덴코 9위), 정보통신서비스는 SK텔레콤 13위(일본기업 NTT 14위) 등 일부분야에서 한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첨단기술 특허출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일기업

마지막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 데이터를 소개한다.

<첨단기술 특허출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일기업>



물론 위 데이터만으로 모든 기술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특허출원은 그 권리내용이 중요하며 반드시 기술력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들수도 있다. 그러나 머릿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안일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번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가즈오미(岩谷一臣) (특허청 파견자)

1992년 특허청 입청. 1996년 심사관 승진, 특허정보과, 특허심사조사실, 조정과 인사담당, 유럽특허청 파견, 2007년 심판관 승진, 심판과 법규담당, 주임상석 심사관 승진, 2011년 6월 현직.